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54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승원 · 박지원 · 김원이
박상혁 · 강준현 · 김남근
민병덕 · 김용만 · 윤준병
임호선 · 이강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2조제1항 중 “200만원 이하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u>200만원 이하의</u>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u> -----. <u>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